

2022년 연수구 특정감사 결과 공개
—연수문화재단—



연 수 구
감 사 실

2022년 연수구 특정감사 결과

☐ 감사대상 : 연수문화재단

☐ 감사기간 및 감사범위

대 상 기 관	감 사 기 간	감사 대상 범위
연수문화재단	2022. 7. 13. ~ 7. 26. (10일)	2020. 1. 1. ~ 2022. 6. 30. 추진업무 전반

※ 단, 채용분야 감사대상 범위는 2021. 1. 1. ~ 2022. 6. 30.

☐ 감 사 반 : 감사반장 등 8명

☐ 중점 감사사항

- 예산의 편성·집행 사항 전반
- 재정운영의 건전화 및 경영 개선 사항
- 사업추진 시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 여부 등
- 조직 및 인사운영의 적정 및 효율적인 운영 여부
- 복무관리 사항 전반

감 사 성 과

☐ 총 지적 건수 : 39건 처분

- 행정상 조치 : 39건 (징계 3건, 주의 19건, 시정 10건, 개선 7건)
- 재정상 조치 : 252,302,064원
- 신분상 조치 : 총 7명 (중징계4명, 훈계 3명)

총 평

- 이번 감사는 구 출연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그리고 방만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신뢰 받는 섬김행정을 구현하고자 연수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 설립 이후 처음 실시하는 특정감사임.
- 2022. 7. 13. ~ 7. 26.까지 총 10일간 실시한 감사결과, **총 39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지적**되어 **관련자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약 2억5천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음.
- 특히 **▲예산낭비 사례 ▲예산 목적외 사용 ▲회계질서 문란 ▲복무위반 ▲채용과정의 위법 ▲성과부풀리기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등 사업 운영 전반과 감사응대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또한 문화재단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목표로 2019년 설립 이후 2020년 최초 사업연도 대비 현재 정원은 6명, 기금적립액을 제외한 출연금 규모는 38%(약 20억)나 증가하였지만,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실패와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 재추진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등 미비한 성과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구 출연금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제외한 자체수익은 사실상 전무하고, 기금의 적립규모는 연평균 47%씩 감소하는 등 경영수지는 매년 악화되는 실정으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침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과 뚜렷한 성과가 없는 각종 사업이나 용역(연구, 개발, 공연 등), 불필요한 인건비 등은 과감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사업 위주로 전반적인 사업 개편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관리감독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재단의 주요정책 및 사업 결정에 있어 사전 예방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직 진단 및 직무량 분석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 규모를 재산정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개 선 목 표 >

- | | |
|--|---|
|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채용 | ☒ 재정건전성 확보 |
| ☒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 ☒ 자체수익 창출 구조 마련 |
| ☒ 효율적인 인력 활용 | ☒ 불합리한 자체규정 정비 |

개 선 과 제		개 선 방 향
1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낭비	① 법정 문화도시 사업 재검토 ② 설립 지차제의 수당 지급단가 준수 ③ 불필요한 회의·심사·자문수당 지급 자제 ④ 소규모 행사용역 및 불요·불급한 연구용역 자제 및 직접 수행 ⑤ 중복자·관외자 지원 등 관행적인 사업방식 재검토 ⑥ 연수구시설안전공단을 활용한 공공문화시설 관리 체계 일원화
2	무분별한 조직 및 인력 확대	① 시설 및 사업 운영인력(기간제근로자) 감축 ② 조직 진단 및 직무량 조사를 통한 정규직 인력 재배치 ③ 수당, 보상금 등을 활용한 편법적인 인력 확대 자제 ④ 투명한 인사위원회 구성·운영(내부직원 인사위원 위촉 불가)
3	회계질서 문란	① 경쟁입찰대상 건에 대한 수의계약 자제 ② 예산목적외사용 지양 ③ 계약 및 대가 지급 시 회계규정 준수 철저
4	복무 위반 및 근무 태만	① 정기·수시적 자체 복무점검 실시 ② 관리·감독 부서의 장 외부감사 지정
5	방만한 경영	① 대표이사 대우 조정 및 연봉제 직원 보수구성 개편 ②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기준 적용 ③ 공무원 수준의 성과급 지급기준 적용 ④ 지나친 성과부풀리기 및 허위실적 보고 적발 시 조치 신설 ⑤ 상위법령·조례·규정에 따른 자체규정 제·개정 및 준수 철저
6	지나친 재정의존도	① 자체수입(기부금) 구조 확립 및 수익사업 개발 ② 계획적인 적립기금 운영 ③ 공모사업, 메세나사업 등 적극적인 외부재원 유치 노력

2022년 연수구 특정감사 결과
연수문화재단

[지적사항목록]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징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징계

【제 목】 ○○○ 채용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및 5호 규정에 의거
이 건 조사사항 및 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징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징계

【제 목】 ○○○ 채용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및 5호 규정에 의거
이 건 조사사항 및 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1. 서류심사 평정표 날인에 관한 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Ⅲ-4 시험의 방법 ‘마. 시험채점 및 시험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2021년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표1]과 같이 서류심사 평정과 관련하여 서류 심사 당일 심사위원 ‘A’의 응시번호 ‘○○○ 연수-03’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 평정표의 심사위원 서명 누락에 대해 당일 현장에서 서명받지 않고 사후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

[표1] 서류심사 평정표 사후 서명 현황

연번	서류전형위원	응시번호	사후서명	비고
1	A	○○○ 연수-03	○	

2.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 제3조(채용방법)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는 연수문화재단 인사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6조(채용절차 및 시험방법 등)에 의하면 채용절차 및 시험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직원 채용에 관한 규칙」 제5조(시험위원의 위촉)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Ⅲ-④ 시험의 방법 ‘다.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에 의하면 채용을 위한 각 전형별 심사위원을 구성 시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2021년 ‘○○○ 연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표2]와 같이 면접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재단 이사(B)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다.

[표2] 면접심사위원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소 속	비고
1	내부위원	C	연수문화재단 △장	
2	외부위원	D	연수구 ★팀장	
3	외부위원	B	◆◆ 대표, 재단 이사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류평정표 사후날인 및 심사위원 위촉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개선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서류심사 평정기준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III-4 시험의 방법 ‘가. 시험의 방법’에 의하면 서류전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하여야 함(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연수문화재단에서는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직원 채용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서류시험 평가기준을 마련해 놓았으나, [표1]과 같이 서류전형 평정기준을 정성평가로만 구성하여 심사위원의 주관이 과다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평정표를 사용하였으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전공 및 경력 평가분야에 있어 각 배점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한 사람의 전공 및 경력을 평가 할 때 심사위원별로 [표2]와 같이 점수편차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표1] 연수문화재단 서류심사 평정표

응시번호	평가항목					총합계 (100점)
	교육사항 (10점)	경험사항 (20점)	경력사항 (30점)	자기소개서 (40점)	우대사항 (+5점)	
	관련 : 5~10점 비관련 : 0~4점	상 : 14~20점 중 : 7~13점 하 : 1~6점	상 : 21~30점 중 : 11~20점 하 : 1~10점	상 : 27~40점 중 : 14~26점 하 : 1~13점	해당 : 1~5점 비해당 : 0점	
...						
...						

[표2] 점수편차 발생 현황 예시

응시자	전공	심사위원	교육사항 평정점수	비고
A	○○과	위원1	0	
		위원2	6	
		위원3	5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류심사 전형 시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서류심사 평정표를 개선하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개선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채용서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6조(채용절차 및 시험방법 등) 제3항에 따르면 “기타 채용절차 및 시험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직원 채용에 관한 규칙」 제9조(채용자료 보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다만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은 채용서류 보관에 대해 [표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연수문화재단의 채용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공기록물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연수문화재단의 채용서류는 인사·감사 등의 목적으로의 활용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표2]의 현황과 같이 2021년 직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합격자 채용자료만 보관하고 불합격자 채용자료는 등록·관리하지 않은 채 폐기한 사실이 있고,
- 불합격자 채용자료의 폐기 시 「공공기록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야 하나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자체규정 및 내부결재 등 미존재) 불합격자 채용자료를 폐기한 사실이 있다.

[표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254p

< 채용전형 시 유의사항 >

④ 채용전형 종료 후 채용서류의 보관 및 파기(채용절차법 제11조)

○ 오프라인으로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입사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동안 채용서류(개인정보 포함)를 보관하여야 함

* 일정기간(채용서류 보관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80일 사이의 기간 중에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 가능 기간으로 정한 기간

[채용서류 반환 관련 절차]

채용절차 개시	채용 여부 확정일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14~180일 중 구인자 지정일)	반환이행기간 (14일 이내)
		반환청구기간 만료일	

- 구인자는 반환* 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채용서류를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해야 함
- ↳ 구직자의 청구에 따라 원본을 반환할 경우 그에 대한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여서는 안 됨.

○ 온라인으로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 반환 의무가 없는 온라인 채용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해야 함

⑤ ④에도 불구하고, 공공기록물인 채용서류의 미파기

○ 구인자가 「공공기록물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채용서류는 「공공기록물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서류를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관리 여부를 결정*해야 함(등록·관리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기록물을 지체 없이 파기)

* 개별법에 따라 관리될 필요가 있는지, 인사·감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표2] 직종별 채용현황(대상기간 : 2021.1.1.~2021.12.31.)

(단위 : 명)

연번	구분	채용구분	채용직종 (직급)	채용 예정인원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인원	채용인원	비고
1	비정규직	신규채용	인턴	2	1.26~2.5 (1.29~2.5)	20	2	
2	비정규직	신규채용	생활문화센터 (기간제)	1	3.16~3.25 (3.16~3.25)	13	1	
3	정규직	신규채용	일반직(7급)	3	3.25~4.5 (3.29~4.5)	114	3	
4	정규직	경력채용	일반직(5급)	1	3.25~4.5 (3.29~4.5)	18	1	
5	정규직	경력채용	일반직(5급)	1	3.25~4.5 (3.29~4.5)	2	0	
6	비정규직	신규채용	문화도시센터 (기간제)	1	4.1~4.9 (4.1~4.9)	3	1	
7	정규직	경력채용	일반직(4급)	1	5.6~5.17 (5.10~5.17)	10	1	
8	정규직	경력채용	일반직(5급)	1	5.6~5.17 (5.10~5.17)	22	1	
9	비정규직	경력채용	송도문화살롱 (기간제)	1	5.6~5.17 (5.10~5.17)	3	1	
10	비정규직	신규채용	아트플러그 연수 (기간제)	2	5.17~5.26 (5.17~5.26)	4	1	
11	비정규직	신규채용	아트플러그 연수 주말근무(기간제)	1	5.28~6.7 (5.28~6.7)	3	1	
12	정규직	경력채용	임원(대표이사)	1	5.31~6.14 (6.7~6.14)	18	0	
13	정규직	경력채용	임원 (비상임이사)	1	5.31~6.14 (6.7~6.14)	5	1	
14	정규직	경력채용	일반직(6급)	1	6.11~6.21 (6.14~6.21)	14	1	
15	비정규직	경력채용	송도문화살롱 (기간제)	1	6.11~6.21 (6.14~6.21)	10	1	
16	정규직	경력채용	임원(대표이사)	1	8.4~8.20 (8.12~8.20)	15	1	
17	비정규직	신규채용	생활문화센터 (기간제)	4	12.16~12.23 (12.16~12.23)	13	4	

자료 : 연수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에서는 불합격자들의 채용서류를 향후 인사·감사 등의 목적으로의 활용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리하시기 바라며,(개선요구)
- 향후 채용자료의 폐기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자체감사자료 불성실 제출

【지 적 내 용】

○ 사건 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2022년 연수구 특정감사」(감사실-5056 및 5066호)의 실시에 따라 특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직원의 근무상황부(출장내역 등)를 연수문화재단에 자료제출 요구하였고, 연수문화재단은 관련자료를 2022년 7월 12일 제출하였다.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은 자체감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6조제1항은 구청장 및 구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문화재단은 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 요청이 있을 때 성실히 감사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부당한 감사자료 제출

연수문화재단은 「2022년 연수구 특정감사」(감사실-5056 및 5066호)의 실시에 따라 직원의 출장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자료에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확인을 성실히 하지 않은 채 하단 [표]와 같이 출장내역이 상당 수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감사관은 부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수차례 감사자료를 수정하는 등 감사자료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표] 연수문화재단이 제출한 직원 출장내역 중 제출 누락내역

연 번	대 상 자	날 짜	시 간
1	A	2020. 9. 16.	16:00 ~ 18:00
2	A	2020. 10. 19.	14:00 ~ 18:00
3	A	2020. 10. 27.	13:00 ~ 16:00
4	A	2020. 11. 12.	14:00 ~ 17:00
5	A	2020. 11. 18.	09:00 ~ 14:00
6	A	2020. 11. 19.	13:00 ~ 17:00
7	A	2020. 11. 26.	16:30 ~ 18:00
8	A	2020. 12. 11.	13:30 ~ 17:30
9	A	2020. 12. 14.	11:00 ~ 14:00
10	A	2020. 12. 18.	09:00 ~ 13:00
11	A	2021. 2. 23.	15:30 ~ 18:00
12	A	2021. 3. 15.	13:00 ~ 16:00
13	A	2021. 3. 30.	15:00 ~ 18:00
14	A	2021. 4. 26.	13:00 ~ 15:00
15	A	2021. 5. 3.	13:00 ~ 16:00
16	A	2021. 5. 28.	13:00 ~ 16:00
17	A	2021. 6. 1.	15:00 ~ 18:00
18	A	2021. 6. 9.	14:00 ~ 18:00
19	A	2021. 6. 14.	13:00 ~ 18:00
20	A	2021. 7. 13.	13:30 ~ 18:00

연 번	대 상 자	날 짜	시 간
21	A	2021. 8. 30.	15:20 ~ 18:00
22	A	2021. 10. 13.	09:30 ~ 12:00
23	A	2021. 11. 3.	13:00 ~ 17:00
24	A	2021. 12. 21.	06:00 ~ 15:00
25	B	2020. 6. 23.	13:30 ~ 18:00
26	B	2020. 9. 1.	15:00 ~ 17:00
27	B	2020. 9. 2.	09:00 ~ 11:00
28	B	2020. 9. 10.	13:00 ~ 14:30
29	B	2020. 9. 25.	17:00 ~ 18:00
30	B	2020. 10. 8.	10:00 ~ 17:00
31	B	2020. 10. 14.	09:30 ~ 14:00
32	B	2020. 10. 16.	16:00 ~ 18:00
33	B	2020. 10. 19.	09:30 ~ 14:00
34	B	2020. 10. 23.	09:00 ~ 13:00
35	B	2020. 10. 26.	09:30 ~ 13:00
36	B	2020. 11. 18.	10:00 ~ 17:00
37	B	2020. 11. 30.	13:00 ~ 18:00
38	B	2020. 12. 28.	11:30 ~ 15:00
39	B	2021. 1. 26.	10:00 ~ 18:00
40	B	2021. 3. 3.	15:30 ~ 18:00
41	B	2021. 4. 29.	13:30 ~ 18:00
42	B	2021. 5. 3.	09:00 ~ 18:00
43	B	2021. 5. 4.	09:30 ~ 18:00
44	B	2021. 5. 26.	14:00 ~ 18:00
45	B	2021. 6. 1.	14:00 ~ 18:00
46	B	2021. 6. 21.	10:00 ~ 14:00
47	B	2021. 7. 13.	09:00 ~ 16:00
48	B	2021. 8. 2.	14:00 ~ 18:00
49	B	2021. 8. 10.	14:00 ~ 18:00

연 번	대 상 자	날 짜	시 간
50	B	2021. 9. 3.	13:00 ~ 16:00
51	B	2021. 9. 28.	09:00 ~ 14:00
52	B	2021. 10. 8.	09:20 ~ 13:30
53	B	2021. 10. 18.	09:00 ~ 18:00
54	B	2021. 11. 4.	15:00 ~ 18:00
55	B	2021. 11. 5.	14:00 ~ 18:00
56	B	2021. 11. 5.	09:00 ~ 14:00
57	B	2021. 11. 8.	16:30 ~ 18:00
58	B	2021. 11. 9.	14:00 ~ 18:00
59	B	2021. 11. 11.	10:30 ~ 14:00
60	B	2022. 1. 12.	13:00 ~ 18:00
61	C	2020. 7. 16.	13:00 ~ 16:30
62	C	2020. 10. 13.	15:00 ~ 18:00
63	C	2020. 10. 14.	10:30 ~ 14:30
64	C	2020. 10. 16.	09:00 ~ 14:00
65	C	2021. 3. 24.	10:00 ~ 12:00
66	C	2021. 4. 14.	09:00 ~ 13:30
67	C	2021. 4. 15.	10:00 ~ 13:00
68	C	2021. 5. 20.	09:30 ~ 12:00
69	C	2021. 5. 24.	13:30 ~ 16:00
70	C	2021. 8. 13.	14:00 ~ 18:00
71	C	2021. 11. 11.	10:00 ~ 14:00
72	C	2022. 4. 1.	13:00 ~ 18:00
73	C	2022. 4. 6.	14:00 ~ 18:00
74	D	2020. 10. 14.	10:00 ~ 13:00
75	D	2020. 12. 16.	16:00 ~ 20:00
76	D	2020. 12. 17.	12:00 ~ 22:00

○ 대상자의 의견 및 검토결과

의견 없음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라며, 추후 감사자료 제출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징계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징계

【제 목】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태 불량

【지 적 내 용】

○ 사건 개요

연수문화재단에 근무중인 A는 20XX년 XX월 XX일 연수문화재단에 입사 하여 20XX년 XX월 XX일까지 □으로 근무하며 □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XX년 XX월 XX일부터 현재까지 △으로 근무하면서 △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연수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3조(출장명령)제1항에 따르면 직원이 재단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얻어야 하며, 같은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직원의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09:00~18:0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1조제1호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제6조에 의하면 모든 직원은 관계 법령, 조례, 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연수문화재단의 모든 직원은 취업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내에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얻어야 하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대상자의 복무 위반 행위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금번 특정감사에서 복무분야 감사를 진행하며 A의 근무지인 연수구청 청사주차장의 자가차량 출입기록과 근무시간 중 출장 또는 개인 연가 등 근무상황 기록을 대조해본 결과 [표 1]과 같이 2020년 6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29일까지 총 3회 지각한 사실이 있으며, 총 47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출장 또는 연가 등 사유 없이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벗어난 사실이 있으며, 근무지를 벗어난 시간동안 업무수행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표 1]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근태불량 내역 : 총 50건

출장	연가	입 차	출 차	입 차	출 차	입 차	출 차	지적사항
x	x	2020-06-18 08:45:43	2020-06-18 09:29:41	2020-06-18 15:38:40	2020-06-18 18:10:21			무단이탈
x	13~14	2020-07-02 08:50:52	2020-07-02 11:23:42	2020-07-02 14:02:38	2020-07-02 18:05:52			무단이탈
x	x	2020-07-06 08:45:27	2020-07-06 15:39:16	2020-07-06 16:09:41	2020-07-06 18:14:54			무단이탈
x	x	2020-07-07 08:29:26	2020-07-07 09:01:43	2020-07-07 09:30:39	2020-07-07 15:49:13			무단이탈
x	x	2020-07-17 08:46:56	2020-07-17 09:40:29	2020-07-17 10:53:15	2020-07-17 15:07:59	2020-07-17 16:07:57	2020-07-17 22:09:15	무단이탈
x	x	2020-08-07 08:46:45	2020-08-07 10:03:57	2020-08-07 11:38:26	2020-08-07 13:41:57	2020-08-07 14:49:16	2020-08-07 18:28:10	무단이탈
x	x	2020-08-19 08:42:37	2020-08-19 11:12:32	2020-08-19 11:57:55	2020-08-19 11:59:22	2020-08-19 13:01:11	2020-08-19 20:51:55	무단이탈
x	x	2020-09-16 08:24:00	2020-09-16 09:09:50	2020-09-16 09:53:04	2020-09-16 15:57:12	2020-09-16 16:53:25	2020-09-16 18:12:33	무단이탈
x	13~14	2020-09-22 08:46:46	2020-09-22 11:05:54	2020-09-22 13:54:39	2020-09-22 18:12:42			무단이탈
x	x		2020-09-24 13:05:18	2020-09-24 15:25:29	2020-09-24 18:18:45			무단이탈
x	x	2020-09-25 08:45:35	2020-09-25 11:43:21	2020-09-25 13:46:14	2020-09-25 18:17:38			무단이탈
x	x	2020-10-13 08:50:46	2020-10-13 15:11:45	2020-10-13 16:49:26	2020-10-13 16:53:15	2020-10-13 16:55:18	2020-10-13 18:07:34	무단이탈
x	x	2020-10-26 08:45:47	2020-10-26 11:41:01	2020-10-26 13:37:53	2020-10-26 13:39:12	2020-10-26 14:42:57	2020-10-26 18:10:38	무단이탈
16~18	x	2020-10-30 08:45:35	2020-10-30 10:53:06	2020-10-30 13:10:31	2020-10-30 13:15:42	2020-10-30 13:46:44	2020-10-30 15:35:45	무단이탈
x	x	2020-11-09 08:45:30	2020-11-09 11:35:53	2020-11-09 13:36:02	2020-11-09 16:31:43	2020-11-09 16:40:06	2020-11-09 18:15:44	무단이탈
x	x	2020-11-10 08:20:04	2020-11-10 14:42:52	2020-11-10 15:09:27				무단이탈
x	x	2020-11-16 08:45:41	2020-11-16 10:11:56	2020-11-16 10:45:05	2020-11-16 17:42:54			무단이탈
x	x	2020-11-19 08:52:04	2020-11-19 11:32:22	2020-11-19 16:34:35	2020-11-19 17:35:11			무단이탈

출장	연가	입 차	출 차	입 차	출 차	입 차	출 차	지적사항
x	x	2020-12-03 09:50:28	2020-12-03 10:17:45	2020-12-03 10:19:19	2020-12-03 11:48:13	2020-12-03 13:51:51	2020-12-03 18:28:18	무단이탈
x	x	2020-12-15 08:48:19	2020-12-15 10:30:49	2020-12-15 15:00:57	2020-12-15 18:29:57			무단이탈
x	x	2020-12-21 08:51:58	2020-12-21 15:56:35					무단이탈
x	17~18	2020-12-24 08:53:29	2020-12-24 11:38:30	2020-12-24 13:28:22	2020-12-24 17:19:28			무단이탈
x	x	2020-12-28 08:35:30	2020-12-28 17:10:57					무단이탈
x	17~18	2021-01-07 08:53:39	2021-01-07 16:31:08					무단이탈
x	x	2021-01-15 08:48:12	2021-01-15 16:29:11					무단이탈
x	x	2021-02-24 08:45:41	2021-02-24 15:36:42	2021-02-24 16:09:12	2021-02-24 18:23:13			무단이탈
x	x	2021-02-26 09:13:24	2021-02-26 20:11:29					지각
x	17~18	2021-03-10 08:37:44	2021-03-10 16:38:16					무단이탈
x	x	2021-03-11 08:40:26	2021-03-11 15:15:52	2021-03-11 15:57:40	2021-03-11 18:25:36			무단이탈
x	x	2021-03-24 08:37:44	2021-03-24 11:43:39	2021-03-24 13:06:47	2021-03-24 16:52:42			무단이탈
x	x	2021-04-14 08:45:31	2021-04-14 15:42:10	2021-04-14 16:24:02	2021-04-14 18:31:51			무단이탈
x	x	2021-04-19 08:48:18	2021-04-19 09:04:05	2021-04-19 09:20:23	2021-04-19 18:31:53			무단이탈
x	11~12	2021-06-02 08:45:28	2021-06-02 11:07:57	2021-06-02 16:15:59	2021-06-02 18:21:27			무단이탈
x	x	2021-06-28 08:54:58	2021-06-28 11:34:55	2021-06-28 13:27:39	2021-06-28 13:31:06	2021-06-28 13:32:45	2021-06-28 18:34:25	무단이탈
x	x	2021-07-02 08:45:20	2021-07-02 14:26:49	2021-07-02 15:36:02	2021-07-02 15:48:42	2021-07-02 15:54:44	2021-07-02 19:40:37	무단이탈
x	x	2021-07-12 12:50:11	2021-07-12 15:38:44	2021-07-12 16:13:09	2021-07-12 16:15:13	2021-07-12 16:40:45	2021-07-12 18:17:27	무단이탈
x	x	2021-08-20 08:44:07	2021-08-20 12:47:09	2021-08-20 14:39:25	2021-08-20 18:16:26			무단이탈
x	11~18	2021-09-07 09:28:59	2021-09-07 09:31:26	2021-09-07 09:32:53	2021-09-07 11:18:35			지각
x	x	2021-09-17 08:49:36	2021-09-17 12:15:25	2021-09-17 12:23:51	2021-09-17 17:24:30			무단이탈
x	x	2021-09-27 08:49:33	2021-09-27 15:25:50					무단이탈
x	x	2021-10-01 08:35:58	2021-10-01 11:51:06	2021-10-01 13:46:50	2021-10-01 13:55:43	2021-10-01 14:28:59	2021-10-01 21:25:00	무단이탈
x	x	2021-10-08 08:46:42	2021-10-08 16:39:08	2021-10-08 18:25:21	2021-10-08 19:05:06			무단이탈
x	x	2021-10-22 08:36:22	2021-10-22 14:45:07	2021-10-22 16:57:19	2021-10-22 18:16:10			무단이탈
x	13~18	2021-10-29 08:48:07	2021-10-29 10:24:37	2021-10-29 12:20:59	2021-10-29 12:23:46			무단이탈
x	x	2021-11-18 09:12:09	2021-11-18 15:24:51					지각
x	17~18	2021-11-25 08:34:45	2021-11-25 15:19:18					무단이탈
x	x	2021-12-02 08:52:13	2021-12-02 11:25:34	2021-12-02 13:44:04	2021-12-02 13:48:07	2021-12-02 13:50:12	2021-12-02 18:33:35	무단이탈

출장	연가	입 차	출 차	입 차	출 차	입 차	출 차	지적사항
x	x	2021-12-09 08:48:15	2021-12-09 15:58:46	2021-12-09 16:24:01	2021-12-09 19:27:03			무단이탈
x	x	2021-12-28 08:41:36	2021-12-28 09:39:21	2021-12-28 10:18:23	2021-12-28 21:20:12			무단이탈
x	14~15	2021-12-29 08:49:24	2021-12-29 13:38:35	2021-12-29 16:29:18	2021-12-29 18:40:09			무단이탈

또한 [표 2]와 같이 2020년 7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총 6차례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할 때에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얻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출장 신청이 없는 내역 : 총 6건

출장	연가	입 차	출 차	입 차	출 차	입 차	출 차	업무내역
x	x	2020-07-20 08:44:03	2020-07-20 13:20:13	2020-07-20 15:36:07	2020-07-20 18:59:11			★★
x	x	2020-09-17 08:44:08	2020-09-17 11:40:45	2020-09-17 12:58:51	2020-09-17 13:09:07	2020-09-17 17:43:21	2020-09-17 18:13:47	□□
x	x	2020-10-15 08:42:56	2020-10-15 14:41:35	2020-10-15 16:50:42	2020-10-15 18:01:25			☆☆
x	x		2020-11-11 11:40:41	2020-11-11 12:48:06	2020-11-11 15:31:54	2020-11-11 17:33:25		■■
x	x	2022-01-06 08:48:31	2022-01-06 15:45:45	2022-01-06 17:35:27	2022-01-06 18:48:39			▲▲
x	x	2022-01-10 08:42:56	2022-01-10 15:35:53	2022-01-10 16:49:47	2022-01-10 18:17:24			◆◆

○ 대상자의 의견 및 검토결과

1. A는 □장으로 근무 당시 사업수행, 민원인 응대, 예정에 없던 일정수행 등으로 긴급하게 외근 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 [표 3, 4, 5]와 같이 차량의 입·출차 기록에는 차량이 출차된 것으로 나온 시간 동안에도 사무실에서 문서시스템을 사용한 기록이 있어 모든 사례를 근무지 이탈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또한 그간 소명자료로 차량 출차시간 동안의 문서결재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2021년 7월 14일 이전의 전자결재내역을 일률적으로 ‘외부에서의 모바일 결재’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소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였다.

[표 3] A가 제출한 소명 사례 1

· 차량 출차시각 : 2021. 9. 27. 15:25:50

문서시스템 사용대상자	사용 기록	사용 메뉴	접속 IP
A	2021-09-27 16:14:48	결재대기문서 [USER]	222.100.66.183
A	2021-09-27 16:20:44	결재완료문서 [USER]	222.100.66.183
A	2021-09-27 16:20:54	결재대기문서 [USER]	222.100.66.183
A	2021-09-27 16:23:35	메일 [USER]	222.100.66.183
A	2021-09-27 16:26:08	전자결재 [USER]	222.100.66.183
A	2021-09-27 16:26:09	양식목록 [USER]	222.100.66.183
A	2021-09-27 16:39:11	결재대기문서 [USER]	222.100.66.183
A	2021-09-27 16:43:21	결재예정문서 [USER]	222.100.66.183
A	2021-09-27 16:49:27	결재대기문서 [USER]	222.100.66.183

[표 4] A가 제출한 소명 사례 2

· 차량 출차시각 : 2021. 10. 29. 10:24:37

· 차량 입차시각 : 2021. 10. 29. 12:20:59

문서시스템 사용대상자	사용 기록	사용 메뉴	접속 IP
A	2021-10-29 10:39:16	전자결재 [USER]	222.100.66.183
A	2021-10-29 10:39:17	양식목록 [USER]	222.100.66.183
A	2021-10-29 10:39:19	결재대기문서 [USER]	222.100.66.183
A	2021-10-29 10:39:52	개인근태현황 [USER]	222.100.66.183
A	2021-10-29 10:39:52	인사/근태 [USER]	222.100.66.183
A	2021-10-29 10:39:54	개인연차현황 [USER]	222.100.66.183
A	2021-10-29 10:58:28	전자결재 [USER]	222.100.66.183
A	2021-10-29 10:58:29	양식목록 [USER]	222.100.66.183

문서시스템 사용대상자	사용 기록	사용 메뉴	접속 IP
A	2021-10-29 10:58:30	결재대기문서 [USER]	222.100.66.183
A	2021-10-29 11:05:59	전자결재 [USER]	222.100.66.183
A	2021-10-29 11:05:59	양식목록 [USER]	222.100.66.183
A	2021-10-29 11:16:44	상신문서 [USER]	222.100.66.183
A	2021-10-29 11:27:00	전자결재 [USER]	222.100.66.183
A	2021-10-29 11:27:00	양식목록 [USER]	222.100.66.183
A	2021-10-29 11:41:14	전자결재 [USER]	222.100.66.183
A	2021-10-29 11:41:15	양식목록 [USER]	222.100.66.183
A	2021-10-29 11:41:17	결재대기문서 [USER]	222.100.66.183

[표 5] A가 제출한 소명 사례 3

· 차량 출차시각 : 2021. 11. 18. 15:24:51

문서시스템 사용대상자	사용 기록	사용 메뉴	접속 IP
A	2021-11-18 15:36:39	WEB_LOGIN	211.222.11.145
A	2021-11-18 15:37:11	MESSENGER_LOGIN	211.222.11.145

A의 의견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무 당시 사업수행, 민원인 응대, 예정에 없던 일정수행 등으로 긴급하게 외근 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보면 평소 A는 출장을 신청 후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지에 있는 직원에게 출장을 대신 신청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이다.

2. [표 3]의 경우 2021년 9월 27일 15시 25분 자가차량이 출차한 후 입차한 기록이 없으며, 그 뒤 16시 14분 문서시스템을 이용하기까지의 시간은 약 49분이므로 출차 후 어딘가에 차량을 주차 후 도보로 근무지에 복귀하여 문서시스템에 접속

하였다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당 공백시간의 업무수행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사전 출장 또한 득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는 근무지 무단 이탈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설사 업무수행으로 외부에 있었다더라도 사전에 출장을 득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표 4]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량 출차 후 문서시스템을 이용하기까지의 약 15분간의 공백시간동안 업무수행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15분이라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생각해볼 때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며, 이 또한 자가차량을 어딘가에 이동시킨 후 도보로 복귀하여 문서시스템에 접속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

[표 5]의 경우도 [표 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출차 후 어딘가에 주차한 뒤 근무지로 복귀하여 문서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판단되며 이는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일은 아침 입차기록을 보면 9시 12분에 입차하였는데, 이전 시간에 문서시스템 사용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각으로 판단된다.

연수문화재단의 문서시스템 이용기록은 감사일 현재 기준 2021년 7월 14일부터 조회가 가능한데, 조회일 이후의 무단이탈 내역 총 12건 중 2021년 9월 27일과 10월 29일 2건을 제외한 무단이탈에 해당하는 총 10건의 공백시간 동안 근무지에서의 문서시스템 이용기록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3. 또한 문답 후 소명과정에서 무단이탈로 인한 공백시간 동안의 문서결재내역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6] A가 문답 후 제출한 소명 사례 4

연 번	입 차	출 차	입 차	출 차	입 차	출 차	문서결재 내역	연가 등
1	2020-07-17 08:46:56	2020-07-17 09:40:29	2020-07-17 10:53:15	2020-07-17 15:07:59	2020-07-17 16:07:57	2020-07-17 22:09:15	09:12, 10:00	
2	2020-08-07 08:46:45	2020-08-07 10:03:57	2020-08-07 11:38:26	2020-08-07 13:41:57	2020-08-07 14:49:16	2020-08-07 18:28:10	14:46	
3	2020-09-22 08:46:46	2020-09-22 11:05:54	2020-09-22 13:54:39	2020-09-22 18:12:42			12:47	13~ 14
4		2020-09-24 13:05:18	2020-09-24 15:25:29	2020-09-24 18:18:45			14:33	
5	2020-12-15 08:48:19	2020-12-15 10:30:49	2020-12-15 15:00:57	2020-12-15 18:29:57			14:14	
6	2020-12-21 08:51:58	2020-12-21 15:56:35					17:24	
7	2020-12-28 08:35:30	2020-12-28 17:10:57					17:48	
8	2021-01-07 08:53:39	2021-01-07 16:31:08					17:01	17~ 18
9	2021-02-26 09:13:24	2021-02-26 20:11:29					08:52	
10	2021-03-24 08:37:44	2021-03-24 11:43:39	2021-03-24 13:06:47	2021-03-24 16:52:42			17:21	

[표 6]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번 1 : 9:40 출차 후 10시 결재 내역을 근무지에서의 결재내역으로 생각한다면 출차 후 어딘가에 주차 후 근무지로 도보 이동 후 문서를 결재한 뒤 다시 주차된 곳으로 도보 이동하여 입차한 경우로 근무지 무단이탈이 성립한다. 이를 모바일 결재 내역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로 근무지 무단이탈이 성립한다.
- 연번 2 : 14:46 결재 후 14:49 입차내역이 있으므로 외부에서의 모바일 결재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 연번 3 : 11:05 출차 후 12:47에 결재한 내역을 모바일 결재로 본다면 11시부터 12시까지의 근무지 무단이탈이 성립하며, 이를 근무지에서의 결재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인 12시까지 공백이 55분이므로 무단이탈이 성립한다.

- 연번 4 : 14:33 결재기록을 외부에서의 모바일 결재로 본다면 근무지 무단이탈이 성립하며, 이를 근무지에서의 결재로 보아도 13:05 출차 후 어딘가에 주차 후 근무지로 도보이동 후 문서를 결재한 뒤 다시 주차된 곳으로 돌아가 15:25에 입차한 경우로 마찬가지로 근무지 무단이탈이 성립한다.
- 이외에 연번 5 ~ 10의 사례 또한 마찬가지로 위 사례들과 동일하게 결재내역을 모바일로 보든 근무지에서의 결재로 보든 결재 수단과 상관없이 근무지 무단이탈이 성립한다. 따라서 감사관이 2021년 7월 14일 이전의 전자결재 내역을 일률적으로 ‘외부에서의 모바일 결재’로 판단하고 소명하는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는 문답과정에서 자신의 자가차량을 타인한테 빌려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답하였고, 이는 곧 자가차량의 입·출차가 A가 외부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하므로 [표 1]의 무단이탈 내역 47건은 사전 출장을 득하지 않았고, 업무수행 내역 또한 소명되지 않는 근무지 무단이탈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가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며 제시한 의견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행위를 한 A를 「연수문화재단 인사규정」 제54조제3호에 따라 중징계 처분 후 그 결과를 통보 바랍니다.(징계)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제 목】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지 적 내 용】

○ 사건 개요

연수문화재단에 근무중인 A는 20XX년 XX월 XX일 연수문화재단에 입사 하여 현재 □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연수문화재단 취업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직원의 1일 근로시간 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09:00~18:0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1조제1호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제6조에 의하면 모든 직원은 관계 법령, 조례, 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연수문화재단의 모든 직원은 취업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대상자의 복무 위반 행위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금번 특정감사에서 복무분야 감사를 진행하며 A의 근무지인 연수구청 청사주차장의 자가차량 출입기록과 근무시간 중 출장 또는 개인 연가 등 근무상황 기록을 대조해본 결과 하단 [표]와 같이 2020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5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출장 또는 연가 등 사유 없이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벗어난 사실이 있으며, 근무지를 벗어난 시간동안 업무수행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표]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내역 : 총 5건

출장	연가	입 차	출 차	입 차	출 차	지적사항
x	x	2020-10-12 08:46:58	2020-10-12 15:09:53	2020-10-12 16:04:45	2020-10-12 18:22:48	무단이탈
x	x	2021-01-04 08:46:58	2021-01-04 16:51:55			무단이탈
x	x	2021-02-18 08:46:35	2021-02-18 11:54:13	2021-02-18 12:21:12	2021-02-18 17:20:28	무단이탈
x	x	2021-09-24 08:43:10	2021-09-24 17:40:13			무단이탈
17:30~ 20:30	x	2022-05-13 06:23:22	2022-05-13 15:44:57	2022-05-13 16:23:42	2022-05-13 18:18:53	무단이탈

○ 대상자의 의견 및 검토결과

의견 없음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행위를 한 A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서·기관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제 목】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태 불량

【지 적 내 용】

○ 사건 개요

연수문화재단에 근무중인 A는 20XX년 XX월 XX일 연수문화재단에 입사 하여 현재 □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연수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3조(출장명령)제1항에 따르면 직원이 재단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얻어야 하며, 같은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직원의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09:00~18:0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1조제1호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제6조에 의하면 모든 직원은 관계 법령, 조례, 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연수문화재단의 모든 직원은 취업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내에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얻어야 하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대상자의 복무 위반 행위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금번 특정감사에서 복무분야 감사를 진행하며 A의 근무지인 연수구청 청사주차장의 자가차량 출입기록과 근무시간 중 출장 또는 개인 연가 등 근무상황 기록을 대조해본 결과 [표 1]과 같이 2020년 6월 16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총 4회 지각한 사실이 있으며, 총 4회 근무시간 중에 출장 또는 연가 등 사유 없이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벗어난 사실이 있으며, 근무지를 벗어난 시간동안 업무수행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표 1]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근태불량 내역 : 총 8건

출장	연가	입 차	출 차	입 차	출 차	지적사항
x	x	2020-06-16 08:43:11	2020-06-16 10:45:01	2020-06-16 12:46:50	2020-06-16 18:49:33	무단이탈
x	x	2020-09-04 08:45:13	2020-09-04 15:56:36	2020-09-04 16:45:54	2020-09-04 18:09:50	무단이탈
x	x	2020-09-18 14:37:16	2020-09-18 15:24:44			무단이탈
x	x	2020-11-19 09:54:37	2020-11-19 20:19:11			지각
x	x	2021-01-15 08:45:23	2021-01-15 15:03:04			무단이탈
13~ 17	x	2021-03-29 10:07:43	2021-03-29 22:08:38			지각
x	x	2021-04-01 09:09:13	2021-04-01 21:42:30			지각
x	x	2021-04-12 09:59:56	2021-04-12 20:08:55			지각

[표 2]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출장 신청이 없는 내역

출장	연가	입 차	출 차	입 차	출 차	업무내역
x	x	2020-12-30 08:42:41	2020-12-30 13:38:06	2020-12-30 19:09:26	2020-12-30 21:43:16	면접참여

또한 [표 2]와 같이 2020년 12월 30일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할 때에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얻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대상자의 의견 및 검토결과

A는 스스로도 무단이탈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지각의 경우도 지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늦은 입차기록으로 소명이 불가능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차량의 입·출차기록과 관련하여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검토해보면 A는 문답과정에서 평소 출근하면 구청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고 답하였으며, 구청에 주차된 자신의 자가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는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곧 자가차량의 입·출차가 A의 직접 운전을 의미하므로 지각 또는 근무지 무단이탈로 판단된다. 또한 차량의 입·출차기록에 오류가 있다면 금번 복무감사 대상이었던 △급 이상 대상자들의 입·출차기록에도 대부분 동일한 일자에 지적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검토결과 중복되는 지각 날짜나 중복되는 시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A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직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행위를 한 A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제 목】 중식시간 미엄수 및 출장 시 사전 출장 미신청

【지 적 내 용】

○ 사건 개요

연수문화재단에 근무중인 A는 20XX년 XX월 XX일 연수문화재단에 입사하여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연수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3조(출장명령)제1항에 따르면 직원이 재단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얻어야 하며, 같은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직원의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09:00~18:0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1조제1호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제6조에 의하면 모든 직원은 관계 법령, 조례, 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연수문화재단의 모든 직원은 취업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내에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얻어야 하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대상자의 복무 위반 행위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금번 특정감사에서 복무분야 감사를 진행하며 A의 근무지인 연수구청 청사주차장의 자가차량 출입기록과 근무시간 중 출장 또는 개인 연가 등 근무상황 기록을 대조해본 결과 [표 1]과 같이 2020년 9월 22일 중식시간을 미엄수한 사실이 있으며, [표 2]와 같이 2020년 6월 12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할 때에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얻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근태불량 내역

출장	연가	입 차	출 차	입 차	출 차	지적사항
x	x	2020-09-22 08:16:41	2020-09-22 11:26:52	2020-09-22 13:27:39	2020-09-22 18:13:00	중식시간 미엄수

[표 2]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출장 신청이 없는 내역 : 총 8건

출장	연가	입 차	출 차	입 차	출 차	업무수행 내역
x	x	2020-06-12 07:55:36	2020-06-12 09:58:35			◆◆
x	x	2020-06-25 08:06:10	2020-06-25 16:38:17			▲▲
x	x	2020-08-10 08:10:00	2020-08-10 13:25:12	2020-08-10 15:09:00	2020-08-10 19:57:56	■ ■
x	x	2020-09-01 08:14:10	2020-09-01 14:38:09	2020-09-01 16:51:28	2020-09-01 20:48:01	☆☆
x	x	2020-10-13 08:03:16	2020-10-13 09:34:48	2020-10-13 10:59:49	2020-10-13 20:36:34	□□
x	x	2020-10-22 08:08:46	2020-10-22 14:41:53	2020-10-22 16:29:37	2020-10-22 21:09:31	○○
x	x	2021-03-03 08:35:30	2021-03-03 13:13:08	2021-03-03 16:10:30	2021-03-04 18:18:08	△△
x	x	2021-03-10 08:27:30	2021-03-10 14:10:27	2021-03-10 15:25:36	2021-03-10 18:15:05	◇◇

○ 대상자의 의견 및 검토결과

의견 없음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중식시간 미엄수 및 업무수행 시 사전에 출장 신청을 얻지 않은 A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회수 690,00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지 적 내 용】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연수문화재단 여비규정」 제5조(출장지의 구분)제2항에 따르면 관내 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0,000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단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할 경우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여비 과다지급 내역

하단 [표]의 대상자들은 출장여비를 수령함에 있어 출장 신청시간과 실 출장시간이 차이나는 경우 출장 시간을 실 출장시간으로 변경하지 않고 신청시간대로 수령하여 결과적으로 총 64건의 출장에 대하여 690,000원의 금액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현황 : 총 64건, 690,000원

대상자	출장 일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수령액 (원)	출장지	관용 차량 사용 여부	지적사항		회수대상 금액(원)
A	2021-08-17	14:00	18: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옥련동)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6:45~)	10,000

대상자	출장 일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수령액 (원)	출장지	관용 차량 사용 여부	지적사항		회수대상 금액(원)
A	2021-10-12	13:00	17: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옥련 동), 송도달 빛축제공원 (송도동)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3:16, 15:57~)	10,000
A	2021-10-22	14:00	18: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옥련동)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5:26, 17:30~)	10,000
A	2021-11-08	11:00	15: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옥련동)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3:58~)	10,000
A	2021-11-09	9:00	14:00	10,000	아트플러그 연수(옥련동)	Y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0,13:24~)	10,000
A	2021-11-15	13:00	17: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옥련동)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2:13~15:12)	10,000
A	2022-01-05	10:00	14: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옥련동)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0:39~13:42)	10,000
A	2022-02-09	9:00	13:00	20,000	옥련동 소호 63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1:34~11:41)	10,000
A	2022. 03.30 .	13:00	18:00	20,000	송도동 송도 문화살롱, 모로아일랜드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6:53~)	10,000
A	2022-05-12	9:30	14:00	20,000	함박마을 일대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2:58~)	10,000
A	2022-06-08	9:20	14:00	20,000	옥련동 일대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3:08~)	10,000

대상자	출장 일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수령액 (원)	출장지	관용 차량 사용 여부	지적사항		회수대상 금액(원)
A	2022-06-21	10:00	14:00	20,000	송도4동 아트포레 상 가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3:31~)	10,000
A	2022-06-22	13:00	17:00	20,000	함박종합 사회복지관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6:41~)	10,000
A	2022-06-29	12:30	18:00	20,000	함박종합 사회복지관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5:41,17:52~)	10,000
B	2020-07-13	13:30	18:30	20,000	인하대 학교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3:59~16:34)	10,000
B	2021-01-25	13:00	17:00	20,000	인천영상 위원회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3:28~15:53)	10,000
B	2021-06-16	13:00	17:00	20,000	송도문화 살롱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4:35~17:49)	10,000
B	2021-07-05	14:00	18:00	20,000	송도문화살롱 (송도2동)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4:14~16:34)	10,000
B	2021-10-21	9:00	18:00	20,000	송도문화살롱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2:46~)	10,000
B	2022-02-23	13:00	17: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6~)	10,000
C	2021-11-17	14:00	18:00	20,000	507문화병커, 진달래 생활 문화센터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7:18)	10,000
C	2022-01-19	13:30	18: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옥련동)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3:38~16:38)	10,000

대상자	출장 일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수령액 (원)	출장지	관용 차량 사용 여부	지적사항		회수대상 금액(원)
C	2022-05-13	13:00	17: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3:16)	10,000
C	2022-05-27	14:00	18:00	10,000	연수구 문화 공원	Y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5:38~)	10,000
C	2022-05-31	9:00	18:00	10,000	아트플러그 연수	Y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09:53,11:06~)	10,000
C	2022-06-23	11:30	16: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1:51~14:13)	10,000
D	2020-07-09	13:00	17:30	20,000	중구 송학동,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농원 마을 등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3:07~16:42)	10,000
D	2020-09-28	13:00	17:00	20,000	인천시 중구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3:44~14:55)	10,000
D	2020-11-04	13:00	17:00	20,000	옥련동 송도 역전시장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3:45~14:48)	10,000
D	2020-11-16	9:00	14:00	20,000	옥련동 송도 역전시장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9:34~10:40)	10,000
D	2021-01-28	14:00	18:00	20,000	경제자유구역청 미추홀타워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4:14~17:13)	10,000
D	2021-03-10	13:00	17:00	20,000	중구 인천 아트플랫폼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3:29~15:54)	10,000
D	2021-07-16	13:00	17:00	20,000	아람도해안 (송도동)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3:29~13:37/ 16:29~16:43)	10,000

대상자	출장 일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수령액 (원)	출장지	관용 차량 사용 여부	지적사항		회수대상 금액(원)
D	2021-07-22	13:30	17:3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옥련동)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3:30~15:27)	10,000
D	2021-09-09	11:00	16:00	20,000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부천)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1:57~12:03/ 15:46)	10,000
D	2021-09-16	18:00	22:00	20,000	파주 송화로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9:59)	10,000
D	2021-10-07	10:00	15:00	20,000	G타워 (송도동)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3:18~14:53)	10,000
D	2021-10-22	14:00	18: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옥련동)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4:03~15:10 /17:32~)	10,000
D	2021-10-26	13:30	17:30	20,000	인천문화 예술회관 (남동구)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5:43~)	10,000
D	2021-12-14	14:00	18: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옥련동)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4:23~)	20,000
D	2022-01-25	14:00	18: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4:55~15:46)	10,000
D	2022-01-26	14:00	18: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4:27~)	20,000
D	2022-01-07	14:00	18: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옥련동)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4~15:41)	10,000
D	2022-01-11	9:00	14:00	20,000	청라블루 노바홀(서구)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2:57,13:41~)	10,000

대상자	출장 일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수령액 (원)	출장지	관용 차량 사용 여부	지적사항		회수대상 금액(원)
D	2022-02-14	9:00	14: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1:24~13:28)	10,000
D	2022-02-21	14:00	18: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4:46~17:42)	10,000
D	2022-02-22	14:00	18: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 인천대학교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4:52,16:58~)	10,000
D	2022-03-29	10:00	15: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0:54,11:41~)	20,000
D	2022-03-31	11:00	16:00	20,000	옥련동 (라마다)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1:36~14:53)	10,000
D	2022-04-05	14:00	18:00	20,000	연수세무서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4:16,16:17~)	10,000
D	2022-04-12	10:00	15: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0:39, 11:37~)	20,000
D	2022-04-15	13:00	17:00	20,000	문화예술회관 부지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4:04~17:00)	10,000
D	2022-05-12	10:00	15:00	20,000	에그셀런트 커널워크점 등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1:49~14:32)	10,000
D	2022-05-18	10:00	15:00	10,000	인하대, 재능대, 인천대 등	Y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0:28,14:07~)	10,000
D	2022-05-19	9:00	18:00	10,000	재단 이사 자택, 사무실 등	Y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종일 사용)	10,000

대상자	출장 일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수령액 (원)	출장지	관용 차량 사용 여부	지적사항		회수대상 금액(원)
D	2022-05-24	12:00	17:0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 등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3:34,15:19~)	10,000
D	2022-06-29	13:30	17:30	20,000	아트플러그 연수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5:57~)	10,000
E	2020-06-11	14:00	18:00	20,000	서울하우징랩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5:38~)	10,000
E	2020-11-06	15:00	19:00	20,000	연수구 일대, 송도문화살롱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5:09~17:46)	10,000
E	2020-11-13	10:30	14:30	20,000	인하대학교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0:41~13:43)	10,000
E	2021-04-27	13:00	17:00	20,000	연수구시설 안전관리공단	N		4월 27일 중복출장	20,000
E	2021-05-06	10:00	14:00	20,000	남동구 KT&G 인천 본부	N	4시간 미만	입출차기록 (10:03~13:24)	10,000
E	2021-08-10	13:00	14:00	10,000	송도문화살롱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3:33)	10,000
F	2022-02-09	9:00	13:00	20,000	옥련동 소호 63	N	4시간 미만	문서사용기록 (12:35~)	10,000

○ 대상자의 의견 및 검토결과

의견 없음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이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출장여비 690,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서·기관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회수 4,885,243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성과급 과다 지급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2022년 지방·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2022년 연수문화재단 예산편성 세부기준」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액을 연봉제와 호봉제 적용 대상에 따라 지급액 산정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위 관련 지침 및 세부기준에 따라 연봉제 대상자에게는 연봉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호봉제 대상자에게는 보수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연봉제 대상자에게도 호봉제 대상자와 동일한 산정방식[(기본연봉+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근무월수)×개인별 지급률]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그 결과 기본연봉으로 산정해야할 성과급을 연봉제 대상자에게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성과급이 산정되어 4,885천원이 과다 지급되게 하였다.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과다 지급된 성과급 4,885,243원을 회수 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급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서·기관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개선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초임호봉 확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연수문화재단 보수규정」 제7조(초임호봉의 확정)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 호봉을 1호봉으로 확정하되 [별표 2-2]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확정하고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력환산표(2020. 7. 15. 이전 기준)>

구 분	경 력	환산율
갑 경력	1.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군경력(전투경찰, 의무경찰 등 의무근무기간 포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에 근무한 경력	100%
을 경력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기관의 고용직, 계약직, 별정직, 청원경찰 근무 경력 2.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3. 교육, 연구, 언론 및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4.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근무경력	80%
병 경력	1.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중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2.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문화재지표조사기관 등에서 종사한 경력	50%

※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경력환산표(2020. 7. 15. 기준)>

구 분	경 력	환산율
갑 경력	1.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군경력(전투경찰, 의무경찰 등 의무근무기간 포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또는 출자, 출연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0%
을 경력	1. 갑 경력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2. 문화예술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80%
병 경력	1. 일반기업체 해당 관련 분야 근무경력(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에 한함) 2. 대학시간강사 경력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	50%

※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연수문화재단에서는 2020. 4. 17. 신규임용 15명, 2020. 9. 16. 신규임용 1명, 2021.5. 27. 신규임용 4명, 2021. 7. 2. 신규임용 1명, 2021. 8. 18. 신규 임용 1명 등 최근 2년 6개월간 22명의 호봉을 확정하였다.
- 재단에서는 규정에 따라 호봉확정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으나, 유사 경력을 인정하는데 있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재 사실을 원칙으로 인정하여야 하나 명확한 근거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 특히 2020. 7. 15.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보수규정에는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020. 4. 17. 이의신청자 5명 중 3명은 직종과 관계없이 건강보험자격득실 자격이 확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을 경력 4호, 을 경력 1호 내지 4호, 을 경력4호로 의결한 사실이 있다.
- 따라서 직원의 경력 인정에 따른 초임호봉의 확정은 보수 지급액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어 명확한 규정과 그에 따른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단의 「보수규정」의 경력환산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와 타 기관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하다.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정확하고 명확한 호봉확정을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와 타 기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보수규정」 제7조(초임호봉의 확정)와 관련한 별표 2-2(경력환산표)를 세부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라며,(개선요구)
- 앞으로 호봉확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2021년('20년실적) 연수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진단의 기본방향, 평가·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13조에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 실적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이하 생략).....
 -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과에서는 2021년(2020년 실적) (재) 연수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계획 수립 후 연수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이라 함) 2020사업연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에 위탁하여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실적에 영향을 끼친 평가지표에 대하여 <표1>과 같이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안모델상 코로나19 맞춤형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표1>

평가방법	측정방식	세부측정방식
코로나19 맞춤형평가	코로나19에 의한 경영실적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지표에 대해 적용 - 경영실적의 변동이 기준치 대비 20% 미만일 경우는 맞춤형 평가방식을 적용함. - 경영실적의 변동이 기준치 대비 20% 이상일 경우는 해당사항에 대해 결측 처리 후 총점 환산방식 적용함.	- (특정 기간의 영향) 해당 기간을 제외한 후 실적을 산출하고, 이를 연간 실적으로 환산 - (특정 사업의 영향) 해당지표의 특정 사업 실적을 제외한 후 실적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실적으로 환산 - (환경 변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 해당지표의 전년도 실적 또는 과거 실적의 평균값으로 당해 연도 실적을 대체하는 등의 방법 적용

- 그러나 문화재단에서는 <표2>와 같이 고유목적사업 실적에 대하여 중도 포기자를 실적에 포함시키거나 코로나19 맞춤형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변경 계획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였다. 또한 성과목표에 직접적으로 상응하는 실적이 아닌 부수적(정성적) 사업 성과까지 실적에 포함시키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실적까지 경영평가 실적에 포함하는 등 실적을 과다하게 부풀려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표2>

사업명	목 표	실 적	목표달성도	실제실적	비 고
◇◇	9	9	100.00%	7	중도포기자 2명 실적에 포함
△△	200	308	154.00%	80	비대면 실적 포함 설문조사자 228명
○○	30	252	840.00%	17	간접참여자 235명 실적에 포함
☆☆	41	41	100.00%	30	사업 결과보고서와 실적 상이
■■	2,000	4,132	206.60%	-	사업종료 이후 실적도 포함

-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하여 <표3>과 같이 경영실적의 변동이 기준치 대비 20% 이상임에도 경영평가단에 맞춤형 평가방식을 제안하거나 목표의 수정 없이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경영실적평가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표3>

사업명	목 표	실 적	목표달성도	비 고
◆◆	4,500	2,968	65.96%	코로나19에 따라 정상 공연불가
▲▲	120	60	50.00%	코로나19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	30	10	33.33%	코로나19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경영실적 평가 시 실적보고서에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경영실적 평가의 주된 목적이 재단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평가하여 기관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서·기관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반납 246,096,121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연수문화재단 결산잉여금(순세계잉여금) 처리 부적정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회계와 결산에 관한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한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II. 예산편성의 원칙, ⑥ 잉여금의 처리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 또한 III.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6. 기타에 따르면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예산절감 등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잉여금 증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여 재정자립도 제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 만큼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연수문화재단 정관」 제30조 잉여금 처리 조항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년도의 운영비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연수문화재단 2020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1,086,612,161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단위 : 원)

예산과목		금 액
순세계잉여금		1,086,613,078
	인건비 집행잔액	84,795,677
	재단운영경비 집행잔액	93,639,913
	문화사업비 집행잔액	892,660,531
	출연금 이자수익	12,250,546
	기타영업외수익	30,731
	기금 이자수익	3,234,763
	순세계잉여금	917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결산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 제6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액 825,000,000원보다 261,612,161원이 초과 발생하였음에도 규정과 정관에 따라 자체수익 15,516,040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집행잔액 246,096,121원을 출연금에서 감액하지 않고 2021년 제2차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목적사업비로 전액 사용하였다.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결산잉여금 처리 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자체 정관 등을 준수하시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2020사업연도 결산잉여금(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분) 246,096,121원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개선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기부금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연수문화재단은 구에서 출연한 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설립·운영되는 연수구 산하의 공법인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르는 법령과 법규, 조례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에 따르면,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규정 시행규칙(2022.3.29.제정)」
제5조(기부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기부금품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따르면

-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와 위원인 ○○, △△, ☺☺이 포함된 5인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위촉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단, 위원장 부재 시
또는 기부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인 주관부서장이 포함된 3인 이상
으로 구성한다.

... (이하생략)

고 규정되어 있다.

- 연수문화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기부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상위 법령에 상충
하는 이 시행규칙을 근거로 [표] 현황과 같이 재단 자체 기부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위원을 전원 내부위원으로 구성·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 2022년 제1회 기부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일	안건명	내부위원	외부위원
20XX. XX. XX.	기부금품 접수 및 처리의 건	6명 전원 (A, B, C, D, E, F)	x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기부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연수문화재단「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일련번호 : 1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개선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연수문화재단 물품 관리 소홀

【지 적 내 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우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각 호에 나열하고 있으며 제11호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연수문화재단 정관」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회계 관리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직위로 물품관리관을,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직위로서 물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연수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이라 한다)은 구에서 출연한 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설립·운영되는 연수구 산하의 공법인으로 구 출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해야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을 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따를 의무가 있다.
- 그러나 문화재단에서는 구 출연금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40개, 162,603천원의 물품을 취득한 이력이 있으나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른 물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물품을 취득하였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정기재물조사를 매 2년 단위(현행 1년 단위)로 실시해야 하나 문화재단에서는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물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의 취득, 사용, 관리, 처분에 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시고 물품 담당자를 별도로 임명하시어 향후 규정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일련번호 : 1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서·기관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개선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연수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 부적정

【지 적 내 용】

- 연수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수문화재단 기금(이하 “재단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라고 재단 기금 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문화재단 정관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기금의 운용방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문화재단 기금은 2019년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폐지로 연수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해지된 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0년 예치금과 이자 2,255,140천원 전액을 재단 기금으로 승계하여 조성되었다.

- 문화체육과에서 2019년에 수립한 「(가칭)연수문화재단 설립 계획안」 III. 주요추진계획, 9.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재단 적립기금 목표액은 2023년까지 200억원이며, 이후 매년 연수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화재단 중기재정전망으로 <표1>과 같이 적립기금목표액을 제시하고 있다.

<표1>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적립기금 계획액							
		기적립액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0년	20,000		5,000	5,000	5,000	5,000			
2021년	10,000	2,265		2,000	2,000	2,000	1,735		
2022년	10,000	3,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그러나 문화재단에서는 <표2>와 같이 매년 특별한 사유 없이 적립기금 계획액을 적립하지 않았으며, 적립기금 목표액을 정관 및 내부규정을 비롯하여 자체 중장기 운영계획에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비계획적으로 기금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기금적립 종료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당초 계획 대비 기금 적립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였으며, 기금적립액 재원이 대부분 출연금으로만 충당하고 있어 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였다.

<표2>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 표 액	실적립액	부 족 액	기금 재원구성			
				출연금	기부금	수익금	기타
2020년	5,000	2,265	2,735	2,265	0	0	0
2021년	2,000	1,267	733	1,235	0	0	32
2022년	1,500	600	900	600	0	0	0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관리감독 부서인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적립기금 목표액, 기금적립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내부규정에 반영하시고,(개선요구)
- 적립기금의 재원을 전적으로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기부금 모집, 경영성과 개선에 따른 잉여금 등 적립기금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서·기관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연수문화재단 예비비 부적정 사용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II.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② 경비, 나. 세부 집행 요령, 5)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정관 개정(’ 22.5.10.) 시 [별지] 기본재산 목록을 갱신함으로써 발생한 지방세(등록면허세 등) 금16,906,950원을 담당자 업무소홀로 인하여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였다.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 일련번호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에 따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 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 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7조(재정 지원)에 따르면,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과 관련한 사업
2.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지원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9조(연수문화재단 설립 등)에 따르면,

-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고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이하생략)

제11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이하생략)
④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이하생략)
⑥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 (이하생략)

으로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정관」 제2조(목적)에 따르면, 이 재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도시 구현, 연수구민의 문화적 권리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이하생략)
4.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이하생략)
6.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 (이하생략)

고 규정되어 있다.

- 연구용역이란, 연구 실시기관이 연구 기관으로부터 특정한 연구를 의뢰받아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고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연수문화재단에서는 상기 조례 및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추진, 문화예술 창작·보급,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0~2021년 2년 동안 [표] 현황과 같이 적게는 8,000천원, 많게는 80,000천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20년 “★★ 연구용역” 및 2021년 “△△연구용역”은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정작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여 1억1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만 투입되었고, 투입예산 대비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 또한 연수문화재단에서는 ▲▲연구용역을 포함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지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제언한 사업을 2022년 연수문화재단 주요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2022년 제1차 추경 시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하였다.

[표] 연도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현황

연도	연구용역명	예산액	결산액	결과 반영 추진사업
2020년	★★	80,000천원	75,000천원	♣♣
	▲▲	8,000천원	8,000천원	◎◎
	◆◆	10,000천원	10,000천원	◆◆
2021년	☆☆	32,000천원	31,790천원	▣▣
	△△	35,000천원	35,000천원	●●
	□□	12,000천원	12,000천원	▤▤
	○○	30,000천원	26,988천원	♠♠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 시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은 2020년 ~ 2021년에 “★★”, “▲▲”, “△△”, “□□” 4개의 연구용역 실시로 총1억3천5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

에도 성과가 미흡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키고 낭비함으로써 불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담당자는 기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 추진하는 “◁▷사업” 도 ♡♡사업의 일환이라고 소명하였으며, 현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한번 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아직 성과를 단정하긴 이르다고 소명하였다.
- 그러나 기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목적이 2022년도에 갱신한 “☆☆공모사업” 관련 보고서에 따라 신규사업인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변경된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나 “♡♡용역” 결과와는 무관한 사업으로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 또한 현재 “☆☆공모사업” 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재도전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사업비는 예산낭비로 볼 수 있으며, 재도전 자체가 성과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으로 문화재단의 소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연구용역만으로 사업이 종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을 최소화하시어 사업예산이 사장·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초 예산편성 시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 향후 연구용역 추진 시 반드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추진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사업별 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영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①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에 따르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재정지원)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연수구에서 연수문화재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표1] 현황과 같이 연수○○지원사업의 4개 분야에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같은 해에 중복 지원하거나 매년 연속하여 지원한 사실이 있다. 특히 2021년 개인 신청자 2명(A, B)은 각 2개 분야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A는 총8,000천원(☆☆지원 5,000천원, ♣♣지원 3,000천원), B는 총5,500천원(♣♣지원 3,000천원, ♡♡지원 2,500천원)을 지원받았다.
- 2021년 연수○○지원사업 분야별 공모신청 및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분야	총 지원대상		단체		개인	
	지원건수	선정건수	지원건수	선정건수	지원건수	선정건수
☆☆	51건	15건	19건	9건	32건	6건
♣♣	12건	5건	4건	2건	8건	3건
♡♡	30건	8건	-	-	30건	8건

[표]와 같이 공모신청 및 선정건수를 비교해 본 결과, 각 분야별 지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지원 3.5:1, ♣♣지원 2.4:1, ♡♡ 3.5:1 정도임.

- 이처럼 연수문화재단에서는 각 분야별 지원 경쟁률이 높았음에도, 2021년 하나의 사업 내에서 다른 분야라고 하여 더 많은 예술인에게 지원할 수 있었던 예산을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한 사실이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동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에 따르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정관」 제2조(목적)에 따르면, 이 재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도시 구현, 연수구민의 문화적 권리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기본계획(△△-XX(20XX.XX.XX.)호)」에 따르면, “연수구 내 청년 문화기획자&청년활동가 발굴 및 DB 구축, 연수구 청년 문화예술활동 자원 조사 및 연구, 연수구 청년 문화리더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적 하에 “연수구 내 거주 및 활동하는 34세 이하 청년활동가 및 지망생”을 사업대상으로 명시하였다. □□사업 지원대상자 1차 공모 선정(8명) 후 참가 신청률 저조에 따라 2020.09.10. □□사업을 변경하여 「★★」라는 사업을 계획·추진하였다.
- 「★★사업」은 “연수구 문화도시에 관심있는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사업대상을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선정된 7명의 대상자 중 연수구 관내 주민은 1명 뿐이었다. 이는 □□ 기본계획 수립 당시 “지역청년들의 문화활동 환경조성에 필요한 의견수렴 및 프로젝트를 진행” 하겠다는 사업 추진

방향에 부합하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2021년 추진사업인 「◆◆」 또한 지원받은 6명의 예술가 중 연수구 주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 따라서 「★★사업」 및 「◆◆」 사업은 연수구 관내 예술인이 아닌 타 지역 예술인들에게 총 2,400천원을 지원함으로써 연수구 예산이 연수구민에게 쓰이지 않았고, 이는 “연수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연수구민의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해 설립된 연수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표1] 연수예술지원사업 지원대상 중복 지원 현황

연번	지원대상자		지원현황			비고
	구분	지원대상자명	지원년도	지원분야	지원금액(천원)	
1	단체	▽▽	2020년	☆☆	5,000	
			2022년	☆☆	10,500	
2	단체	▼▼	2020년	☆☆	5,000	
			2021년	☆☆	9,500	
			2022년	☆☆	11,000	
3	단체	△△	2020년	☆☆	6,000	
				◆◆	3,000	
			2021년	☆☆	10,000	
				◆◆	30,000	
			2022년	◆◆	50,000	
4	단체	▲▲	2020년	☆☆	6,000	
			2021년	☆☆	10,000	
			2022년	☆☆	10,500	
5	개인	C	2020년	☆☆	3,000	
			2021년	☆☆	4,000	
6	개인	D	2021년	☆☆	4,000	
			2022년	♀♀	4,000	
7	개인	A	2021년	☆☆	5,000	
				♀♀	3,000	
8	단체	◎◎	2021년	☆☆	9,500	
			2022년	☆☆	10,500	
9	개인	E	2021년	♀♀	3,000	
			2022년	♀♀	4,000	
10	개인	B	2021년	♀♀	3,000	
				♂♂	2,500	

[표2] 사업별 지원대상자 연수구 거주 현황

연도	사업명	지원대상자(개인 및 단체)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금액(천원)	비고
2020	★★	F		인천시 미추홀구	1,000	관외자
		G		경기도 파주시	1,000	
		H		서울시 송파구	1,000	
		I		경기도 김포시	1,000	
		J		인천시 남동구	1,000	
		K		경기도 부천시	1,000	
		L		인천시 연수구	1,000	
	□□	단체(참여자 M)		인천시 연수구	3,000	관내주민
		단체(참여자 N)		인천시 연수구	2,500	
		단체(참여자 O)		인천시 연수구	2,500	
2021	◆◆	프로젝트 A	P	서울시 은평구	9,000	관외자
			Q	경기도 파주시		
			R	경기도 부천시		
		프로젝트 B	S	전북 군산시	9,000	
			T	서울시 서대문구		
			U	경기도 화성시		

- 이와 관련하여 담당자는 별도의 사업으로 다른 분야에 지원할 경우 중복 지원도 타 지역에서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으며, 타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 구민에게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재단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다.
- 그러나 관례적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각 지원사업별 경쟁률이 평균 3:1 수준으로 높았으며, 사업의 취지가 연수구 예술인들에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주기 위함임으로 중복지원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관례적 허용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 그리고 타지역 예술가의 개인역량 강화와 작품활동을 위한 지원이 구민의 문화다양성 증진과는 연관성이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사업 추진 시 동일인에게 중복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및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정관」에 규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지원하여 구 예산이 낭비되거나 구 재정에 부담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 일련번호 : 2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개선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문화예술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7조(재정 지원)에 따르면,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과 관련한 사업
2.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지원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지도·감독)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 (이하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동 조례 18조(지도 감독) 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6조(보고·검사·감사)에 따르면,
 - ① 구청장 및 구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 및 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사업 관리규정」 제7조(지원금의 교부 조건)에 따르면,
 - ② 지원 사업자는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2020년~2021년 ♀♀사업에 총 35,000천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음에도,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사업 관리규정」 제14조(지원사업 정산검사)
 - ③ 지원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지원사업 중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 정산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이하생략)라고 규정된 조항을 근거로 이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이는 상위 조례의 근거 조항(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지도 감독)에 반하는 자체 관리규정으로 인하여 교부된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하게 사용된 지원금이 있다 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하다.
- 연수문화재단은 상기와 같이 보조금 관리 및 정산업무 처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함으로써 지방재정 손실 및 예산 누수 가능성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전적으로 출연금에 의존하는 재단 상황임에도 ‘500만원

이하의 지원사업 중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 정산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는 운영규정에 따라 정산을 하지 않아 지원대상자가 실제 목적대로 지원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연도별 ☀️사업 미정산 사업현황

연도	사업명	선정자(단체)명	지원 대상자수	지원금액	미정산 사유
2020	○○○		총5명	총15,000천원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사업 관리규정』 제14조(지원사업 정산검사) 3항에 의거 미정산
1	●●●	☺☺	2	5,000천원	
2	◇◇◇	☀️☀️	2	5,000천원	
3	◎◎◎	A	1	5,000천원	
2021	□□□		총8명	총20,000천원	
1	♠♠♠	B	1	2,500천원	
2	♣♣♣	C	1	2,500천원	
3	☆☆☆	D	1	2,500천원	
4	◁◁◁	E	1	2,500천원	
5	★★★	F	1	2,500천원	
6	■ ■ ■	G	1	2,500천원	
7	♡♡♡	H	1	2,500천원	
8	♥♥♥	I	1	2,500천원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사업 관리규정」 제14조3항 항목에 대하여 각 상위 조례의 근거 조항과 일치하도록 내용 삭제 등 관리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일련번호 : 2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서·기관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하 생략)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고 규정되어 있으며,

○ 동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또한, 동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별 신청 서류 및 각종 지급금액 청구서 등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하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각 사업별 신청서 및 사례비 청구서, 계약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지 않고 수집한 서류를 방치·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개인정보 관리 현황

연도	관련 서류	개인정보관련 확인사항
2020	□□ 신청서	○ 신청서 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민등록등본 수집
	○○ 신청서	○ 신청서 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민등록등본 수집
	♡♡ 특강 사례비 지급(정정)	○ 청구서 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 참여수당 지급 결의	○ 청구서 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 제작수당 지급	○ 청구서·계약서·이력서 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2021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9월 사례비	○ 주민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미제출
	●● 강의 사례비 지급	○ 강의수당 청구서 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 특강 사례비 지급	○ 특강 사례비 청구서 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 9,10,11월 사례비 지급	○ 사례비 청구서 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 현장실습 활동 사례비 지급(5차)	○ 사례비 청구서 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미제출
	▽▽ 강의 사례비 지급	○ 사례비 청구서 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민등록증 사본
	△△ 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및 지급청구서 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2022	▲▲ 사례비 지급 결의	○ 사례비 내역서 및 청구서 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 5월 사례비 지급	○ 사례비 내역서 및 청구서 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 사례비 지급	○ 사례비 내역서 및 청구서 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 상기 현황은 사업별, 연도별 예시임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취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 일련번호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은 2022년 ○○ 용역 계약 시 실적에 따른 지급이 아닌 월별 정액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자문의뢰 내역을 보면, 2022년 6개월간 총 10건(월평균 1.6건)의 자문내역이 있으며 그중 유선은 5건에 해당된다. 또한 자문내용이 단순법령, 단순한 근무관련 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수구 ○○ 운영 조례[자문 1건당 7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와 비교 시 상당한 자문료 차이를 보인다.
- 또한 연수문화재단 ☆☆ 연구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평가위원수당 [표3]과 연수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연수구 예산편성 운영기준(2시간 7만원)과 비교 시 상당한 수당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1]

연번	연도	계약 구분	계약명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확인사항
1	2022	용역	○○자문료 지급	6,000천원	· 실적에 상관없이 매월 정액제로 지급
2	2022	용역	연수문화재단 ☆☆연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48,500천원	· 평가위원 수당 과다 책정

[표2] 자문의뢰 내역

연번	의뢰일자	내 용	의뢰방법
1	2022.02.18	-	이메일
2	2022.02.25	-	이메일
3	2022.03.11	-	유선
4	2022.03.25	-	유선
5	2022.03.28	-	이메일
6	2022.04.29	-	이메일
7	2022.05.	-	유선
8	2022.05.20	-	유선
9	2022.06.10	-	유선
10	2022.06.22	-	이메일

[표3] 연수문화재단 사업관련 심사수당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소집심의 (서류, 인터뷰)	1시간 이내	20
	2시간 이내	25
	3시간 이내	30
	4시간 이내	35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에서는 2023년 예산 편성 시(계약종료 후) ○○에 대한 공고를 통하여 모집을 실시하고 수당지급 시 월정액이 아닌 건당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하길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기관경고)

【 일련번호 : 2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세출예산과목 과목해소에 따르면 행사·홍보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기관이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광고선전비의 집행에 해당하며, 도서인쇄비는 각종 업무관련 인쇄비, 승차권 제작, 정기간행물 구독, 도서구입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수선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이며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에 계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예산집행 시 세출과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1] 현황과 같이 시설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도배 방음보수 공사에 대하여 시설 공사비용을 수선유지비에서 집행하였고, 기관이 추진하는 행사의 성격으로 볼 수 없는 △△퇴임식에 사용하는 물품 등을 행사·홍보비에서 구입하였으며, 소모품비로 집행하여야 할 직원 명함 제작을 도서인쇄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그리고 [표2] 2020년 세출예산서 상 「□□ 사업」 회의운영비 집행잔액 4,950천원을 무단으로 「☆☆」 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 집행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르면 세출예산서 작성 시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재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재원 표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재원이 있으면 명확히 표시하여 재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수문화재단 세출예산서에 재원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세출예산 집행현황

예산과목	지출일자	집행금액(원)	집행내용	비고
수선유지비	2020.04.28	19,750,000	○○센터 방음보수공사	시설비
행사홍보비	2021.04.19.	50,000	△△ 퇴임식 물품(꽃) 구입	-
	2021.04.19.	33,000	△△ 퇴임식 현수막 제작	-
도서인쇄비	2021.04.19.	297,000	직원 명함 제작	소모품비

[표2] 2020년 연수문화재단 세출예산서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사업				15,000		15,000
	200 경비			15,000		15,000
	218 행사홍보비			5,000		5,000
	추경3회			5,000		5,000
	○ **** 운영		5,000,000원*1식	5,000		5,000
	220 회의운영비			10,000		10,000
	본예산			15,000		15,000
	○ **** 수당		100,000원*15명*10회	15,000		15,000
	추경3회			10,000		10,000
	○ **** 수당		경정 10,000,000원	10,000		10,000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에서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입·세출예산서에 재원을 표시하여 예산편성 하시길 바라며,(시정요구)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주의요구)

【 일련번호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서·기관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지 적 내 용】

- 연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 공모사업 준비와 ▲▲ 기획 및 운영을 위하여 2021년부터 현재까지 ●●와 △△을 위촉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까지 ●●에게 3,000천원씩 13차례에 걸쳐 총 39,000천원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에게 3,000천원씩 9차례에 걸쳐 총 27,000천원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지출예산과목 해소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급량비나 교통비 등 실비성격으로 지급하거나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으로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재단에서는 ●●의 역할을 각종 자문으로 명시하였음에도 행사실비 보상금을 산출하는데 자문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따르거나, 급량비나 교통비 등 소요실비를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않고 단순히 학술용역인건비 책임연구원 단가를 준용(투입률 50%)하여 월 3,000천원으로 보상금을 책정·지급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의 역할을 자문 및 지도가 아닌 ▲▲ 기본계획 수립, ▲▲ 발전방안 마련, 현장 지휘 및 총괄 등으로 사실상 재단의 ▲▲담당 사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실비 성격이나 반대급부적 사례금이 아닌 인건비 성격으로 행사
실비보상금을 혼용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아울러 △△가 행정증빙으로 제출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활동보고서에
는 증빙사진,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활동하고 작성한 보고서
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재단에서는 보완 조치 없이 총9,000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및 △△에게 지급하는 행사실비보상금 산출기준을
“소요실비” 및 “자체수당 기준”에 따라 재산정 하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 행사실비보상금을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하지 않도록 △△의 역할을 재정립
하시고 2022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에게 지급된 행사실비보상금의
지출증빙서류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일련번호 : 2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회수 445,90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회계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재단의 예산·결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법령, 다른 규정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기타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한다.
- 정원가산업무비는 기관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격려, 생일 기념품, 불우직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관련 법령 해석은 “열거주의”(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나 금지가 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원칙)가 적용된다.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해 집행 가능한 범위는 축의·부의금,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회의·간담회·행사관련 식사 제공, 격려금품 지급,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본청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이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2021.01.04.부터 2021.10.17.(단, 2021.09.06.~2021.10.17. 기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기간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문서에 따르면 ‘사적모임 제한’이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적모임의 대표적인 예시로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들고 있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면서 사용일시가 아닌 사용일자만 공개하였고, [표 1] 현황과 같이 정원가산업무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에 관해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소속 직원의 명절 선물을 구입하면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 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연번	지출일자	집행금액(원)	집행내용	확인사항
1	2021.04.19.	97,900	-	목적 외 사용
2	2021.05.13.	34,000	-	목적 외 사용
3	2021.09.13.	1,107,040	-	지급대상자 미기재
4	2021.12.17.	96,000	-	목적 외 사용
5	2021.12.17.	80,000	-	목적 외 사용
6	2021.12.17.	80,000	-	목적 외 사용
7	2021.12.17.	8,000	-	목적 외 사용
8	2021.06.18.	50,000	-	목적 외 사용
9	2022.02.21.	1,018,640	-	지급대상자 미기재

※ 연수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자료, 상기 현황은 사업별·연도별 예시임

[표 2] 방역지침 관련 사적모임 위반현황

연번	모임일자	참여인원(명)	집행금액(원)	동호회명	확인사항
1	20xx.xx.xx.	5	75,000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20xx.xx.xx.	6	80,000	☆☆	
3	20xx.xx.xx.	10	100,000	□□	
4	20xx.xx.xx.	10	100,000	☆☆	
5	20xx.xx.xx.	11	105,000	□□	
6	20xx.xx.xx.	5	75,000	○○	
7	20xx.xx.xx.	5	25,000	□□	
8	20xx.xx.xx.	12	110,000	☆☆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잘못 집행된 업무추진비 445,900원에 대하여 회수 하시고 “임직원 추석 명절선물 구입” , “임직원 설 명절선물 구입” 건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표 2]와 관련한 관련자들에게 집합금지 위반 확인서를 감사실로 제출하시길 바라며,(시정요구)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주의요구)

【 일련번호 : 2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서·기관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회계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재단의 예산·결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법령, 다른 규정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8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지방계약법)」 적용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지급,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는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는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4번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기준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 대금청구 금액의 2/100로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표]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등을 구비서류로 하고 지급 처리하여야 하나 매월 기성금 대가 지급을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연번 1, 8), 표준계약서 작성 후 대가 지급을 신용카드 결제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연번 11, 12)
- 또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매입기준을 지키지 않고 지역개발채권을 과다 징구하였으며(연번 10), 과업의 완성을 확인 후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선결제 하는 등 대가 지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대가지급 관련 현황

연번	(세금)계산서 발행일	지급일	적 요	채권자	지급금액 (원)	확인사항
1	신용카드결제	2020.09.11.	-	□□	660,000	기성금 신용카드결제
2	2020.09.03.	2020.09.11.	-	☆☆	6,820	대가지급 지연
3	2020.09.25.	2020.10.13.	-	○○	3,141,600	
4	2021.09.10	2021.10.12.	-	△△	370,000	
5	2021.12.02.	2021.12.17.	-	▲▲	141,360	
6	2021.12.07	2021.12.17.	-	▼▼	12,000,000	
7	신용카드결제	2021.10.13.	-	☼☼	1,800,000	용역 완성의 검사 미 실시 후 선결제 지출증빙서류 미비 (검수 사진 미첨부)
8	신용카드결제	2021.10.13.	-	□□	660,000	기성금 신용카드결제
9	신용카드결제	2021.10.14.	-	◇◇	120,000	지출증빙서류 미비

연번	(세금)계산서 발행일	지급일	적 요	채권자	지급금액 (원)	확인사항
10	2021.12.08.	2021.12.17.	-	☺☺	7,275,000	대가지급 지연 지역개발채권 과다징구 (준공금액의 2%)
11	신용카드결제	2021.12.17.	-	●●	686,400	표준계약서 작성 후 신용카드 결제
12			-	★★	510,000	
13	2022.03.10.	2022.04.01.	-	☺☺	3,194,700	대가지급 지연

※ 상기 현황은 사업별·연도별 예시임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출증빙서류 미비건(연번 7,9)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길 바라며,(시정요구)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가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주의요구)

【 일련번호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서·기관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사용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부서별로 발급된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는 신용카드 등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에 등재 및 지출원에게 통보(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하여,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총괄계좌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1개 계좌 원칙 적용)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표 2]와 같이 명확한 사유 없이 다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신용카드 등 발급대장 작성을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였으며([표1] 연번 4, 5), 신용카드 사용 후 2020~2022년 3년간의 사용자의 자필서명 기재(일부 특정담당자 자필서명건 제외)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신용카드 발급현황

연번	발급일자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확인사항
1	2019.12.30.	XXXX-XXXX-XXXX-XXXX	A	발급 결재 문서 부존재
2	2019.12.30.	XXXX-XXXX-XXXX-XXXX	A	
3	2019.12.30.	XXXX-XXXX-XXXX-XXXX	A	
4	2022.02.25	XXXX-XXXX-XXXX-XXXX	B	발급일자 2022.06.08. 발급일자 오기
5	발급일자 누락	XXXX-XXXX-XXXX-XXXX	C	발급일자 누락

[표 2] 재단 운영비 등 신용카드 발급현황

연번	발급일자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확인사항
1	2020.06.11	XXXX-XXXX-XXXX-XXXX	A	개설목적 불분명 (내부결재 상 개설목적 : 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
2	2019.12.30.	XXXX-XXXX-XXXX-XXXX	A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표 1]의 연번 4, 5에 대해서는 정확한 신용카드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수정하고 기입하시길 바라며,(시정요구)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사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주의요구)

【 일련번호 : 3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지 적 내 용】

-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회계 관리규정」 제28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한 조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으로 “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범위를 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와 연관된 조항이 아니며, 한시적 특례로 인해 1인 견적을 허용한 사항은 아니다.

- 「지방계약법」을 구체화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중 2인 이상 견적제출은 견적서 제출방법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의 ○○ 시스템 및 행사물품 임차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한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소기업, 소상공인 대한 사항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아닌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했다.
- 위와 같이 2인 견적제출 공고를 통해 진행되었어야 할 계약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공정한 계약 절차가 무시되고 입찰 대비 상당한 예산(약 11,742천원)낭비를 초래하였다.

[표] 계약현황

연도	계약 구분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업체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비 고
20xx	용역	○○ 용역	20xx.xx.xx. (20xx.xx.xx.~ 20xx.xx.xx.)	☺☺	xx,xxx천원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기관경고)

【 일련번호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참가자격 미확인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 연수문화재단에서는 20XX. XX. XX. 연수구 ○○연구용역 재공고에도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이후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 시 최초입찰공고 자격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진행시켜야 하나 ‘참가자격 중 최근 3년 이내 단일건수 2,000만원 이상의 유사 연구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의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채 계약을 체결하였다.
- 확인자 의견에 따르면 수주실적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계약서류에 관련 증명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소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 계약현황

연번	연도	계약 구분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업체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확인사항
1	2021	용역	○○ 연구용역	20XX.XX.XX. (20XX.XX.XX.~ 20XX.XX.XX.)	☺☺	26,988천원	입찰공고후 2회유찰 유찰후 수의계약체결 최초입찰공고시 자격기준의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채 계약체결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기관경고)

【 일련번호 : 3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서·기관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환급 184,80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과세

【지 적 내 용】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 자목에 따르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9항에 규정에 따라 법령에 의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2022년 5월 9일 [표] 제안서평가위원회 시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7명의 위원에 대하여 개인별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8% 24,000원, 주민세 0.8% 2,400원 총26,400원(총184,800원)을 과세 후 개인별 273,000원을 지급하였다.

[표] 계약현황

연번	연도	계약구분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확인사항
1	2022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용역	☼☼	48,500천원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과세지급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과세된 184,800원 (개인별 26,400원)에 대하여 환급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일련번호 : 3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수의계약으로 인한 공정한 계약절차 무시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경우 전자 공개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 2건, 용역 12건(605,730천원) 총 14건의 경쟁입찰대상의 건에 대하여 단 1건의 입찰공고 없이 여성기업, 장애인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 하여 공정한 계약절차가 무시되고 경쟁입찰대비 약 72,688천원 상당의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표]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구분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확인사항
1	2021	공사	▲▲▲ 공사	◇◇	33,000	입찰대상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체결
2		용역	▼▼▼ 연구용역	▲▲	35,000	
3		용역	○○○ 수행 용역	○○	29,000	
4		용역	●●● 기획운영 용역	☼☼	54,396	
5		용역	◇◇◇ 연구용역	△△	31,790	
6		공사	☘☘☘ 공사	▼▼	41,680	
7		용역	◎◎◎ 임차운영용역	☆☆	97,850	
8	2022	용역	☺☺☺ 청소관리용역	☘☘	33,314	
9		용역	☆☆☆ 수행용역	◎◎	36,100	
10		용역	◎◎◎ 수행용역	☼☼	55,000	
11		용역	☼☼☼ 수행용역	○○	40,000	
12		용역	□□□ 프로젝트	▽▽	31,600	
13		용역	▽▽▽ 운영용역	☺☺	29,000	
14		용역	△△△ 공연	●●	58,000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의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을 통하여 예산절감과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 일련번호 : 3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검사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인수 하므로 통상적으로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연수문화재단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시작일을 잘못 산정하여 하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공사 현황

연번	연도	계약 구분	계약명	계약업체	준공검사일	하자보증기간	확인사항
1	2021	공사	○○○ 공사	●●	2021.XX.XX	20XX.XX.XX~20XX.XX.XX	준공검사일 기준 기간 미산정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잘못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하여 재발급을 통하여 시정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 일련번호 : 3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의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 감사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 통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상감사 규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 조에 따르면 집행부서의 장은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과 2천 만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 계약업무 및 1천만원 이상인 예산의 이용· 전용 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 등을 점검·심사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에 앞선 감사관에게 일상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2022년 ○○○ 용역 건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사업임에도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 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일상감사 미실시 현황

연번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확인사항
1	2022년 ○○○ 용역	58,000천원	2022.XX.XX	· 일상감사 미실시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 일련번호 : 3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 서·기 관 명】 연수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통 공사·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출자·출연 기관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회계 관리규정」 제28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물량을 구조별·공종별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에서는 [표 1]와 같이 2건의 동일한 공사를 사전에 정확한 계획이나 사전조사 없이 긴급한사유로 추경을 통하여 2021년 [표 1](연번 2)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1월 동일한 업체와

동일한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노무비(인건비)등의 중복된 지출로 예산 절감의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표 3]과 같이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통합발주를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동일업체와 계약하면서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또한, 2021년 10월 ○○○ 실내 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서울 소재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베이크아웃¹⁾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단순히 사무공간 내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작업을 2022년 3월 동일업체와 계약 후 진행하였다.

[표 1] 공통공사 발주현황

연번	연도	계약구분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업체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확인사항
1	2020	공사	●●● 방음보수공사	20XX.XX.XX (20XX.XX.XX.~ 20XX.XX.XX.)	☼☼	19,750천원	□□ 일부방음 공사시행
2	2021	공사	●●● 방음보완공사	20XX.XX.XX (20XX.XX.XX.~ 20XX.XX.XX.)	☼☼	33,000천원	□□ 일부추가 방음공사시행(동일업체)

[표 2] 공통용역 발주현황

연번	연도	계약구분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업체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확인사항
1	2021	용역	○○○ 실내환경 개선용역	20XX.XX.XX (20XX.XX.XX.~ 20XX.XX.XX.)	○○○	4,950천원	○○○ 실내환경 용역
2	2022	용역	○○○ 실내환경 개선용역	20XX.XX.XX (20XX.XX.XX.~ 20XX.XX.XX.)	○○○	4,400천원	○○○ 추가 실내환경 용역 (동일업체)

[표 3] 각 부서별 분할계약 현황

연도	계약명	월별 지출금액(원)	통합발주 가능여부	비고
2020	-	1,100,000	청소용역 1건으로 통합발주 가능 (과업범위 변경계약 가능)	
	-	2,905,100		
2020	-	140,000	소독용역 1건으로 통합발주 가능 (과업범위 변경계약 가능)	
	-	250,000		

연도	계약명	월별 지출금액(원)	통합발주 가능여부	비고
	-	200,000	무인경비용역 1건으로 통합발주 가능 (과업범위 변경계약 가능)	
	-	428,000		
	-	285,000		
	-	110,000		
2021	-	1,068,900	청소용역 1건으로 통합발주 가능 (과업범위 변경계약 가능)	
	-	2,299,300		
	-	100,000	무인경비용역 1건으로 통합발주 가능 (과업범위 변경계약 가능))	
	-	110,000		
	-	420,000		
	-	285,000		
	-	1,026,000	공기청정기 임차용역 1건으로 통합발주 가능 (과업범위 변경계약 가능))	
	-	108,720		
	-	510,000		
2022	-	1,105,200	청소용역 1건으로 통합발주 가능 (과업범위 변경계약 가능)	
	-	2,794,600		
	-	165,000	무인경비용역 1건으로 통합발주 가능 (과업범위 변경계약 가능)	
	-	110,000		
	-	100,000		
	-	420,000		
	-	100,000		
	-	330,000	복합기 임차 용역 1건으로 통합발주 가능 (과업범위 변경계약 가능))	
	-	220,000		
	-	660,000		
	-	330,000		

※ 연수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자료, 사업별·연도별 예시임.

상기 현황 중 월별 지출금액은 월별 과업량이 따라 금액의 차이 및 오차가 있음.

[표 4] 실내환경개선후 수치변화도(포름알데히드)

작업일자	기준치	작업전	작업후	비 고
2021. 10.	0.21	0.245	0.001	
2022. 03	0.21	0.234	0.000	

위 [표 4]와 같이 작업 후 포름알데히드 수치는 줄어들었지만, 작업 전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는 수치도 아니었고, 5개월 후 기존 수치로 되돌아온 점, 베이커아웃 작업으로 인한 냄새제거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등 중복된 용역 발주로 예산 절감의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기준 및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분할 계약되지 않도록 통합발주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1) 신규주택에서 실내온도를 높여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가스나 물질을 제거하는 일.

2022년 연수구 특정감사 결과
연수구 문화체육과

[지적사항목록]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서·기관명】 문화체육과

【행정상 조치】 개선요구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수 지급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2019년 연수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이라 함) 설립 당시 문화체육과에서 수립한 「보수운영 체계 구성」[문화체육과-xxxx(20xx.xx.xx.)]에 따르면 보수운영 체계는 연봉제와 호봉제로 구분하며, 연봉제는 대표이사, 사무국장, 팀장급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연봉구성은 기본연봉과 부가급여(가족수당, 연차수당)로 명시하고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단의 보수운영 체계의 관련근거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들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수립한 보수운영 체계와 달리 문화재단에서는 연봉제 대상으로 적용받는 팀장급 직원에게도 부가급여로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수규정을 제정하였고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과 재단 직원의 상이한 연봉 구성과 각종 부가급여로 인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상의 성과급 관련 규정 해석에 혼선이 발생함으로써 2021년 재단의 성과급 4,885,243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처 분 요 구】

- 문화체육과장은 관련 규정과 2019년 문화재단 설립 당시 수립한 보수 운영체계를 준수하시어 재단의 보수체계를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할 수 있도록 보수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요구)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서·기관명】 문화체육과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기관경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연수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 부적정

【지 적 내 용】

- 연수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수문화재단 기금(이하 “재단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라고 재단 기금 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문화재단 정관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기금의 운용방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재단 기금은 2019년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폐지로 연수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해지된 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0년 예치금과 이자 2,255,140천원 전액을 재단 기금으로 승계하여 조성되었다.

- 2019년 문화체육과에서 수립한 「(가칭)연수문화재단 설립 계획안」 Ⅲ. 주요추진계획, 9.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따르면 재단 기금의 적립기금 최초 목표액은 200억원이며,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단에서 적립하는 실제 기금 적립액에 따라 매년 재단의 중기재정전망으로 적립기금 목표액과 연간 계획액을 <표1> 같이 변경하였다.

<표1>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적립기금 계획액							
		기적립액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0년	20,000		5,000	5,000	5,000	5,000			
2021년	10,000	2,265		2,000	2,000	2,000	1,735		
2022년	10,000	3,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그러나 문화재단에서는 <표2>와 같이 매년 연간 적립기금 계획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적립하지 않았으며, 적립기금 목표액을 정관 및 내부규정을 비롯하여 자체 중장기 운영계획에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비계획적으로 기금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기금적립 종료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당초 계획대비 기금을 장기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였다.

<표2>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 표 액	실적립액	부 족 액	기금 자원구성			
				출연금	기부금	수익금	기타
2020년	5,000	2,265	2,735	2,265	0	0	0
2021년	2,000	1,267	733	1,235	0	0	32
2022년	1,500	600	900	600	0	0	0

- 또한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단의 비계획적인 기금 적립액에 따라 매년 수동적으로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출연기관의 중기재정전망을 변경하여 재단 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재단의 기금 적립재원 대부분을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였다.

【처 분 요 구】

- 문화체육과장은 연수문화재단 기금의 목표액, 기금적립의 종료기한이 재단 내부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라며, 재단 기금의 재원이 전적으로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부서·기관명】 문화체육과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감액 246,096,121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연수문화재단 결산잉여금(순세계잉여금) 처리 부적정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회계와 결산에 관한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한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II. 예산편성의 원칙, ⑥ 잉여금의 처리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 또한 III.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6. 기타에 따르면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예산절감 등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잉여금 증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여 재정자립도 제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 만큼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연수문화재단 정관」 제30조 잉여금 처리 조항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년도의 운영비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연수문화재단은 2020사업연도 결산 결과 <표1>과 같이 1,086,612,161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제6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825,000,000원 보다 261,612,161원이 초과 발생하였다. 하지만 문화재단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자체 정관에 따라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예산에서 감액하지 않고 인건비와 운영비,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여 2021년 제2차 이사회 의결하였다.

<표1>

(단위 : 원)

예산과목	금 액
계	1,324,929,085
명시이월금	131,696,200
공공미술프로젝트	131,696,200
보조금반납예정액	106,619,807
지역문화인력배치지원	1,000,000
지역문화인력프로젝트 사업	21,200
꿈다락토요문화학교	27,481,362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7,627,700
지역문화생태계구축통합운영	70,489,545
순세계잉여금	1,086,612,161
인건비 집행잔액	84,795,677
재단운영경비 집행잔액	93,639,913
문화사업비 집행잔액	892,660,531
출연금 이자수익	12,250,546
기타영업외수익	30,731
기금 이자수익	3,234,763
순세계잉여금	917

- 문화체육과에서는 「연수문화재단 2021년 제2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 및 의결사항 승인 요청」에 따라 「2021년 제2차 연수문화재단 이사회 의결안건 검토보고」를 통하여 연수문화재단 2020사업연도 결산 결과 초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61,612,161원 중 집행잔액 246,096,121원을

출연금에서 감액하지 않고 전액 재단 인건비와 운영비, 목적사업비로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

【처 분 요 구】

- 문화체육과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잉여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연수문화재단 2020사업연도 결산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분) 246,096,121원을 2022년 연수문화재단 출연금에서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